

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

2026. 10.

금 융 위 원 회

I. 추진 배경 1

II. 현황 및 평가 2

1.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현황 2

2.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황 3

3. 평가 및 개선 필요점 4

III. 개선 방안 7

1. 상환능력 기반 시효완성 원칙 확립 8

2. 개선된 원칙에 따라 장기 부실채권 일제 정비 9

3. 기관별 관리기준 정비 및 캠프의 일원화 관리 강화 ... 10

4. 연체초기 골든타임 내 보증부 대출 채무조정 지원 확대 ... 11

5. 적극적 채권관리 유인제고와 인프라 정비 12

IV. 추진계획 14

I. 추진 배경

- 공공부문은 위기 극복,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, 자체 정책대출·보증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
 -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민간의 부실채권을 인수·정리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회복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뒷받침
 - 신용회복위원회 출범 등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상환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
 - 또한, 시장기능만으로는 어려운 부문에 정책금융을 직접 공급
- 금융시스템 안정과 시장기능 보완에 기여해 왔으나 공공부문의 경직성과 소극적 관행으로 부실채권이 장기간 누적되어 온 한계
 - 부실채권의 누적은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할 경제주체의 근로의욕을 꺾고 실업·소비둔화를 유발하여 거시경제에 악영향
 - 연체 누적·장기화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물려 국가적 경제활력을 심각하게 저해
- 이번 정부 들어 「새도약기금*」을 통해 그간 민간·공공에서 누적되어 온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
 - * 연체 7년 이상, 원금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하고,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
 - 아울러, 「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」(26.2월)을 통해 민간에서는 부실채권이 누적되지 않도록 제도·관행을 일신
 - 공공부문이 부실채권 관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공공부문의 연체도 신속히 조정하여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

⇒ 연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부터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할 필요

II. 현황 및 평가

1.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현황

□ **(개념)** 부실채권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의미하나,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발생 경로가 다양

① [보증기관(신·기보·서금원 등)] 공공기관이 보증한 금융사 대출 연체시, 보증부분(80~100%) 대위변제(연체 3~6개월)후 구상채권으로 보유

② [매입기관(캠코, 예보*)]: 他 금융회사(부실금융회사) 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

* 예보는 KR&C(정리금융회사)를 통해 부실금융회사 매수자가 인수를 거부한 부실채권 또는 파산재단 종결시까지 회수되지 못한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

③ [대출기관(서금원)]: 금융공공기관이 직접 대출시에는 일반 금융회사와 같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

□ **(규모)** '26.6월말 현재 7개 금융공공기관*이 보유·관리하는 개인 및 법인 부실채권의 전체 규모는 59.6조원

* 신보, 기보, 농신보, 주금공, 예보, 서금원과 캠코

○ 이 중 개인(가계+개인사업자) 부실채권은 23.7조원(39.8%), 법인 부실채권은 35.9조원(60.2%)

<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현황('26.6월 기준, 단위: 조원) >

구분		신보	기보	주금공	농신보	예보	서금원	캠코	합계
유형별	개인	3.0	1.0	2.4	1.8	0.3	4.6	10.6	23.7
	법인	6.7	5.2	0.9	1.1	3.7	-	18.3	35.9
금액별	~5천만원	1.2	0.1	0.7	0.7	0.1	4.6	5.0	12.3
	5천~5억원	6.5	2.7	1.7	1.9	0.5	-	11.0	24.4
	5억원~	2.1	3.5	0.9	0.3	3.3	-	12.9	22.9
연체기간	~5년	7.0	4.6	2.3	1.6	0.0	3.3	2.3	21.2
	5년~20년	2.4	1.4	0.6	1.1	2.9	1.2	18.9	28.6
	20년~	0.3	0.2	0.4	0.2	1.0	-	7.7	9.8
소계		9.7	6.2	3.3	2.9	4.0	4.6	28.9	59.6
채무조정중		2.1	2.5	1.8	0.6	0.2	2.8	3.5	13.5

2.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흐름 개황

<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흐름 개요 >



※ 회수활동: (재산조사) 채무자 명의 재산의 주기적 파악*을 통한 회수가능액 판단 (추심) 직접 채무상환 촉구(우편·전화 등), 신용정보회사(CA)로 추심위탁 (강제집행) 채무자 부동산·차량 등 강제경매, 예금채권 압류추심 등

* 공공정보(등기, 토지·건축물대장, 자동차등록원부 등)를 통한 신규재산 발견 등

□ (채권관리 단계) ①대위변제 後 구상권 보유 → ②상각 → ③체계적 채권 관리·재기 지원을 위한 캠프 매각 또는 ④시효연장·소각

① [대위변제] 금융공공기관이 보증한 보증부 대출이 부실화되면, 대출금융사에게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 취득(통상 연체 6개월 내외)

* 단, 보증기관이 아닌 매입기관(캠코·예보)은 주로 既상각된 장기연체채권 매입·취득

② [상각] 회수가능성이 없을시 손실처리하고, 특수채권으로 관리

* 금융공공기관의 상각까지 기간은 평균 2.4년 수준('17~'25년 기간 중)

③ [매각] 부실채권 관리의 일원화·효율화 및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상각된 특수채권을 전문 인수기관인 캠코에 매각*

※ '17.3월 「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」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신속히 상각하고, 캠코에 매각하여 일원화 관리

* 4개 금융공공기관 (신·기보, 주금공, 예보) 및 자율적 협약체결 기관 22개 기관

* '17~'26.6월까지 4개 기관 매각실적 14.1조원(연간 평균매각 규모 약 2조원 내외)

④ [시효 관리]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시* 시효완성(=회수포기) 여부를 검토하고, 연장결정 시에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연장

*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,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시 10년씩 연장

□ **(채무조정)** 자체 채무조정 제도 운영, 신복위 채무조정 참여

○ 자체 채무조정은 개별 채무에 대해 신속히 장기분할상환 전환, 이자감면·연체이자 면제 지원 → 상각 이후 원금 감면* 가능

* 채무과중도·연체기간에 따라 원금의 30~70%(취약계층 최대 90%) 감면 허용

○ 신복위 채무조정시에는 **소 금융권 채무를 통합한 조정 가능**

< 현행 채무조정제도 개요와 주요 특징 >

구분	자체 채무조정	신복위 채무조정	개인회생
운영주체	· 개별 금융회사·공공기관	· 신용회복위원회	· 법원
대상채무	· 개별 채무	· 금융권 채무, 통신전기요금	· 상거래채무 포함 소 채무
조정기간	· 2주 내외로 신속	· 2개월 내외	· 통상 12개월 이상 기간소요
추천대상	· 개별채무가 조정되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	· 다중 금융채무로 종합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	· 상거래채무, 사인간채무 등 모든 채무조정 필요시

3. 평가 및 개선 필요점

① **(연체초기)** 대위변제 채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적정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가 재기·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

① 금융공공기관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前 (연체 3~6개월) 채무 조정이 사실상 불가해 구제가 지연

* 대출 금융회사는 대위변제시 채권 회수가 가능해 신복위 조정에 응할 유인 미미

○ 대위변제 前 대출은 신복위 조정시 조정안에서 제외되고, 채무자는 대위변제 後에 재신청·조정반영 불가피(수개월 소요)

○ 특히, 대위변제시 대지급 정보가 등록 → 차주신용에 큰 불이익*

* 장기연체정보와 동일하게 5년간 이력이 남아 금융활동에 불이익 발생

② 부분보증* 구조인 보증부 대출 특성상, 대위변제 後 채권이 구상채권(금융공공기관)과 잔여 무담보 신용채권(금융회사)으로 분리

*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부분(0~20%) 책임을 부담

○ 금융사가 상각된 잔여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매각하거나 유동화할 경우, 일관성 있는 채권관리·채무자 보호 곤란

③ 신복위 채무조정과 달리 금융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은
상각 前에는 원금감면이 제한*되는 등 지원 일관성에도 제약

* 예: (상각 전 자체조정) 장기분할상환, 이자감면·연체이자 면제 등, 원금감면 제한
(신복위)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위변제 6개월 후 최대 30% 원금감면(1년 70%)

② (상각·매각 등) 기관별로 상이한 상각·매각기준을 정비하고, 자산
관리공사를 통한 일관성 있는 채권관리를 보다 진전시킬 필요

① 기관별로 상각 기준이나 절차가 달라 담당자 판단*에 따라 동일
상황의 채무자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는 지적

* 현행 매각규정 등은 임의규정으로 지점 관리인력의 판단에 따라 매각

< 기관별 부실채권 주요 관리제도 비교 >

구분	신보	기보	주금공	농신보	예보	서금원	캠코
상각주기	분기	반기	반기	연 2 회	반기	연 2 회	분기
주요 상각기준	회수불능+ 대위변제후 1년 경과*	회수불능+ 대위변제후 1년 경과*	회수불능+ 대위변제후 1년 경과	회수불능	시효완성, 인수후 3년 경과 등	대위변제후 1년 경과+ 회수불능	시효완성
소각주기	반기	반기	상시	연 2 회	분기	사లే없음**	반기
주요 소각기준	시효완성	시효완성	시효완성	시효완성	시효완성, 회수불능	-	시효완성, 회수불능

* (상각불가) 구상실의 500 만원 이상 채권보전된 재산이 있을시, 가동 중 기업 등

** 서금원은 '16.9 월 설립, 현재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없어 소각기준이 없음

② 캠코로의 채권매각을 통해 채권관리의 일원화가 진전되었으나,
기관별 매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리 일관성은 부족

- 기관들은 상각 이후 평균 6.8년간 보유*하고 연체 후 매각까지
9.2년이 소요되는 등 매각이 지연되는 경향

* ① 자체 채권관리 인력이 있고 ② "회수가치>매각가" 판단 등으로 매각에 미온적

※ '17.3월 「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」에 따라 그간 자체 채무조정
확산, 상각기간 단축*, 캠코매각을 통한 일원화 관리기반 마련** 등 채권관리 진전

* 상각기간: (중전) 대위변제 등 이후 상각까지 소요기간 3~10년 → ('17~'25년) 평균 2.4년

** 캠코의 '17~'26.6월간 인수분 14.1조원에 채무조정 (0.7), 새도약기금매각 (0.4), 소각 (1.8) 지원

⇒ 다만, 캠코로의 매각지연 등 개선점 발굴·정비와 최근 민간 금융권의 '채무자
재기 중심' 채권관리 혁신을 반영·선도하는 데에 보다 박차를 가할 필요

③ **(시효 관리)** 통상 기관들의 시효관리 원칙은 '1차(5년)연장, 2차(15년) 완성'이나, 기계적 시효연장 관행*에 따른 장기연체 누적

* 예: 소멸시효 도래시 압류된 적극재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행적 시효연장

○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시효 연장제외(완성)기준도 각기 상이

<주요 금융공공기관 소멸시효 관리제도 비교>

구분	신보	기보	주금공	예보
원칙	1차 연장, 2차 완성	시효중단·포기 원칙	1차 연장, 2차 완성	1차 연장, 2차 완성
주요 완성 예외	① 소액(2백만원) ② 주민등록 말소자 ③ 경제능력없는 65세↑	① 건강상태 고려시 경제활동 능력없음 ② 회수실익 < 소송 집행비용	① 소액(2백만원) ② 60세↑ + 5백만원↓ ③ 사회취약계층 (기초수급, 중증장애인, 차상위)	① 소액(2백만원), ② 70세↑ ③ 사회취약계층 (기초수급, 중증장애인)

④ **(업무관행)** 균형있는 추심·적극적 채권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와 인프라 정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채권관리를 유도할 필요

○ 추심에 대한 민원 우려와 건전성(회수율) 유지 부담 등에 따라 적극적인 조정·정리보다는 경직적·기계적 업무관행*이 상존

※ 매년 공공정보 등을 조회하여 신규재산 발견시 가압류 등 법조치를 기계적으로 취하나, 민원 우려, 타 채권자 경합·회수실익 미확정 등으로 강제집행은 소극적*

* 최근 5년간 캠프에서 (가)압류 등 보전조치 이후 강제집행 비율은 36%

○ 시효 도래시 압류된 적극재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효는 관행적으로 연장

○ 일부 기관들은 특수채권 추심을 민간 채권추심회사(CA)*에 위탁
→ 연체 채무자 재기·포용을 고려한 균형있는 추심에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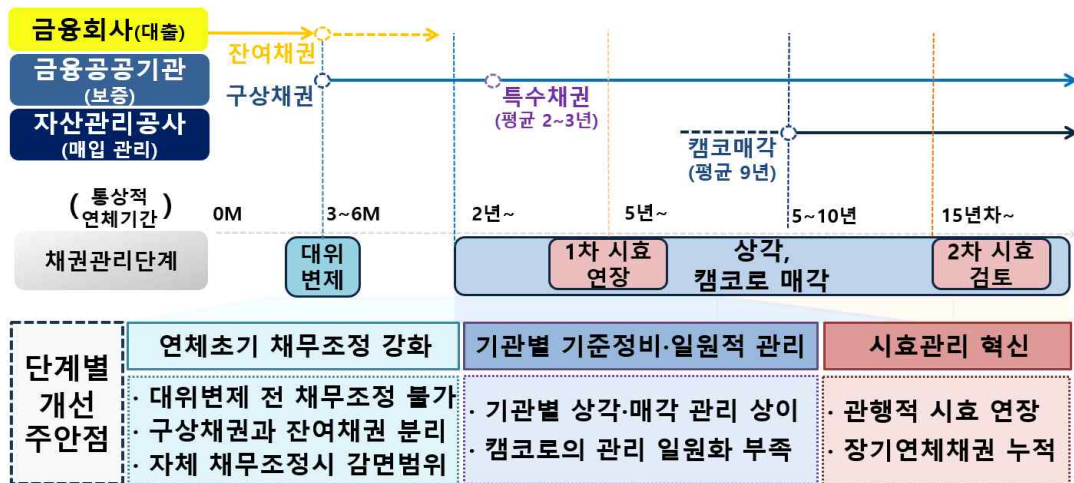
* (성과보수) 회수액의 10~30%를 성과보수로 수령 → 공적채권 추심이 성과 중심 운영 (재위탁) 개인사업자(위임직 추심인)에게 추심 재위임 → 위탁추심 관리감독 등 약화

Ⅲ. 개선 방안

【 기본 방 향 】

- ◆ 앞으로의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는 그간 노력을 계승해 나가면서 민간금융권의 채권관리 개선을 반영·선도
- ◆ 대위변제부터 상각·매각, 시효관리까지 부실채권 관리 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여 장기연체 누적을 방지

【 채권관리 단계별 개선점 및 개선방향 】



개선방향

1 상환능력 기반 시효완성 원칙 확립

- 상환능력 없을 시 5년 완성 원칙화, 15년 소각 원칙

2 개선된 원칙에 따라 장기 부실채권 일제정비

- 15년 이상 부실채권 일괄 정비
- 5~7년 연체 5천만원 이하 채권 순차적 정비

3 기관별 관리기준 정비 및 캠프 일원화 관리강화

- 기관별 상이한 부실채권 관리기준과 절차 정비
- 기관별 캠프 매각시기·대상 구체화, 캠프는 적극적 채무조정·관리

4 연체 초기 골든타임 내 채무조정 지원 확대

- 채무조정제도 종합비교 안내
- 대위변제 前 채무조정 절차 마련
- 잔여채권 통합조정
- 자체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허용

5 적극적 채권관리 유인제고와 인프라 정비

- 공공기관 위탁추심 관행 개선
- 재산조사 제도 개선
- 성과지표 개선 및 면책제도 마련
- 주요내용 공시 및 업무보고

1 상환능력 기반 시효완성 원칙 확립

◆ 상환능력이 없는 소액연체는 1차 소멸시효 도래(예: 5년)시 완성, 연체액 무관 2차 소멸시효(15년) 도래시 완성 원칙화

① **(1차 시효완성)** 연체 후 5년이 경과하여 최초 소멸시효 도래시,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**상환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원칙화**

① **(사회 취약계층)** 사회적 취약계층*의 경우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년 소멸시효 완성

*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연금수급자, 국가유공자(생계지원금 수급)

② **(소액채권)**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로 재산조사 결과 회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* 소멸시효 완성

* 압류된 재산 등이 있어도 강제경매 등을 통한 회수가능 금액 500만원 이하

③ **(5천만원 이하 채권)** 채무자 신청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* 소멸시효 완성

* 예: **(재산)** 금융자산<6개월 최저생계비, 부동산 등 기타재산 회수실익 500만원 ↓, **(소득)** 기준중위소득의 60%(26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252만원) 이내

- 재산조사 결과 **상환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**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 상환능력 심사 신청 안내

※ **상환능력심사 개선(안)**: 신복위 신용상담에 따른 **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**받아 평가
☞ 소득·지출·재산(금융자산 포함), 채무, 신용정보 포함 → 더 정밀한 평가 가능
신복위 상담단계에서 채무자에 적합한 채무조정제도와 고용·복지 등 복합지원 가능

④ **(법인 및 5천만원 초과 채권)** 기관 자율로 관리기준을 세워 관리

※ **(연장 이후 조치)** 5천만원 이하 개인·개인사업자 채권으로서 **시효가 연장된 경우** 캠프에 매각하여 적극적 채무조정, 주기적 소각 등 **일원화된 관리 강화**→10p

② **(2차 시효 완성 원칙)** 연체 15년이 경과하여 2차 시효 도래시, 특별한 사유* 外에는 **채무자 신청없이도 연체액 무관 소각 진행**

* ① 채무조정·회생중, ② 채무상환이 가능한 재산이 있음에도 미상환시 (☞상환후 잔여채무 소각 가능), ③ 재산도파·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

2 개선된 원칙에 따라 장기 부실채권 일제 정비

◆ 「새도약기금」 및 금번 방안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既누적 장기부실채권을 일괄 정리

①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은 아니나 1차 시효가 도과한 연체 5년 이상 7년 이하, 5천만원 이하의 부실채권 0.4조원도 정비

- (사회 취약계층)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, 별도의 심사 없이 관리불능 편입 및 소멸시효 완성
- (소액채무) 5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로서 재산조사 결과 회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관리불능 편입 및 소멸시효 완성
- (그 외 채무) 채무자 신청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*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각

* 채무자가 상환능력 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캠프로 매각, 채무조정 유도

※ 채무규모·상환능력 심사기간 등을 감안, 기관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 정리

② 15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4.9조원을 일괄 정비

- 7개 금융공공기관의 15년 이상 장기부실채권 중 법조치·채무 조정 채권 등을 제외한 4.9조원에 대하여,
-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신속 소각가능한 4.5조원은 재산조사 (차주신청 불요)를 거쳐 특이 사유*가 없으면 즉시 소각(~'27.1Q)

*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이 상당히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

- 잔여분 0.4조원도 기관별 소멸시효 완성조치 및 채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·소각 등 순차적으로 정리(~'27)

※ 조치사항: (~'27.1Q) 기관별 계획에 따라 신속 정리
이후 기관별로 필요한 이사회 의결, 법규내규 정비 등을 거쳐 순차적 진행

3 기관별 관리기준 정비 및 캠프의 일원화 관리 강화

◆ 채권의 통일적인 상각·매각을 위하여 기관별 상이한 부실채권 관리기준·절차를 정비하고, 캠프 매각시기·대상 등을 구체화

① 기관별 상이한 부실채권 관리기준·절차를 정비*하여 통일하고, 정성적 기준을 가급적 정량 기준으로 전환

* 상각기준(요건·시기), 매각기준(대상·규모·보유기간), 소각기준(대상·주기), 채무조정 등

○ 관리기준과 제도개선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명문화함으로써,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기반 마련

② 기관들의 캠프로의 채권매각 시기·대상을 구체화하고, 캠프는 적극적 채무조정·채권관리 추진 → 일원화의 효과성 제고

① (매각 원칙)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(+1년*) 시점까지 캠프 매각을 원칙화

* 시효연장시 실제 매각의 행정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+1년내 매각

- 가급적 연체 3년 내 매각하되, 소멸시효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연장 결정시 매각여부도 함께 결정하여 지체없이 매각

※ 기타 채권은 현행과 같이 기관 판단에 따라 자율 매각

② (채무조정) 캠프는 인수 채권에 대해 타 기관(최대 70% 감면 가능) 보다 원금감면폭 확대* 등 차별화된 채무조정제도 운영

* 채무과중도에 따라 (현행) 30~60% 감면 가능 → (개선) 30~80% 감면 가능

③ (주기적 심사) 캠프는 소멸시효 연장시 주기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하여(신청 기반)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각

※ 조치사항: 각 기관별 관리기준과 절차 정비, 내규 반영 등 지침화

4 연체초기 골든타임 내 보증부 대출 채무조정 지원 확대

◆ 대위변제 특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재기·지원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증부 대출의 채무조정 절차를 정비

① **(안내강화)**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제도 안내시*, 자체 채무조정제도 뿐 아니라 **신복위 등 他 제도까지 종합·비교** 안내

* 기한이익 상실 전, 대위변제 시점 및 이후 주기적 안내 시 등

○ 상담시 채무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강화

② **(대위변제 前 채무조정)** 금융공공기관 보증부 대출도 **대위변제 前 채무조정 진행**이 가능한 절차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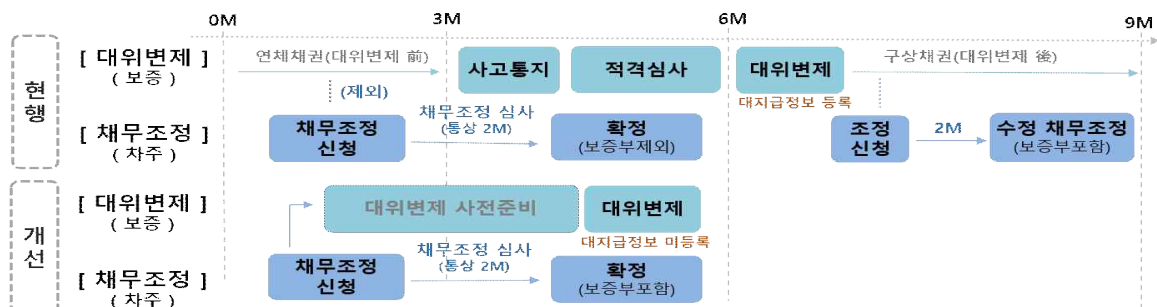
① 신복위는 채무자가 대위변제 前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의사가 있을시, 原채권금융사와 보증기관에 사전 공유

② 대위변제 전부터 채무조정 조건 협의와 대위변제 준비 동시 진행*

* 단, 보증기관은 필요시 대출정상화를 위한 기간(냉각기간)을 부여·요구할 수 있음

③ 채무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위변제 완료, 대지급정보 미등록(단, 채무조정 실효시 대지급정보 등록)

< 보증부 대출 대위변제 前 채무조정 절차 전후 흐름 >



☞ **(종전)** 대위변제 후에야 채무조정 최종 성립, 연체기간 6개월~9개월 경과 채무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급 정보는 등록 → 신용불이익

☞ **(개선)** 대위변제 전 보증부대출 포함 채무조정 진행, 3~6개월 내외 성립 가능 채무조정자에 대한 대지급 정보 미등록에 따른 신용상의 불이익 차단

③ **(잔여채권 통합조정)** 보증부대출을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통합 관리하여 잔여채무의 매입추심업자 등으로의 유출을 방지

- ① 금융공공기관들은 자체 채무조정 접수시, 잔여채권 보유 회사에 통지하고 기관 기준으로 채무조정 협의·체결
- ② 금융회사가 보유한 잔여 무담보채권을 대외 매각하려는 경우 캠프 매각을 의무화(→캠프는 보증기관에 매입사실 통지)

④ **(원금감면)** 자체 채무조정시, 상각 전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*과 유사하게 연체기간·채무과중도 등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 추진

* (신복위 례)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위변제 6개월 후 원금 최대 30% 감면(1년 후 70%)

※ 조치사항: (안내강화) 신복위 중심 금융공공기관 공통 종합안내(안) 마련
(채무조정 제도 관련) 금융회사·보증기관·캠프 협약, 제도(내규) 정비

5 적극적 채권관리 유인제고와 인프라 정비

◆ 금융공공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추심관행·업무 인센티브·인프라 정비

① **(위탁추심관행 개선)** 금융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(CA)에 추심 위탁시 적용할 수 있는 **공통의 채권추심 위탁기준** 마련

- 회수실적, 수수료 등 뿐 아니라, 과잉추심 방지를 위한 조직과 내부통제 체계 등 일정요건을 갖춘 CA에 위탁 (채무자보호 우수 CA)
- 필요시 채무자보호 우수 CA를 공동 선정·활용하는 방안 검토
- 위탁기준 시행 준비기간 동안 장기부실채권 일제 정비 일정 등에 따라 위탁 비중·채권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

* 예: 15년 초과 장기부실채권부터 위탁비중 조정('27년) → 위탁기준 전면시행

※ 조치사항: 위탁추심 활용 금융공공기관(캠프, 주금공, 예보)의 기관별 내규정비를 거쳐 CA 선정기준에 반영

② **(재산조사 개선)**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자 상환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재산조사 근거 확충 추진

○ 조세·채납정보 공유*를 위한 각 기관의 근거법률 개정 검토

* 조세(국세, 지방세, 4대보험) 채납은 최우선 변제되므로, 후순위인 구상권자는 채납정보 없이 회수가능액 확정 곤란 → 회수실익이 확정없이 압류·시효연장 장기화 유인

※ 단, 이용목적·범위를 법조치 해제 및 채권정리로 제한하는 등 적정하게 한정

○ 사회보장정보·보훈정보 등 공유*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

* 상환능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을 신속히 식별해 채무조정·시효완성에 활용 가능

③ **(인센티브)**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노력 유도

○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상 기관별로 보다 적극적인 상각·매각·시효완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향*을 재경부와 협의

* 연체초기 채무조정, 캠프매각, 부실채권 정리실적 등 적극적 정리 노력을 보다 반영

○ 아울러,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 및 채권정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근거를 마련*

* 同 개선방안에 따른 업무수행 기준·절차를 지침으로 명확화하면서 함께 포함

④ **(감독 강화)** 내·외부 통제를 위해 기관별 채무조정, 상각, 시효완성 등 관리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(캠코*)

* ① 채무조정·상각·매각 실적을 캠코에서 취합 후 캠코 및 신정원을 통한 공시
② 월/분기 단위 금융위 보고를 통해 대외 통제를 강화(☞ 관련 업무보고서 마련)

※ 추진사항: (재산조사) 기관별 법개정 검토·추진(채납정보), 소관기관 협의(사회보장정보 등)
(인센티브) 재경부와 경영지표개선 협의(성과지표), 내규정비(면책근거)
(공시·보고) 자산관리공사 시스템 개선, 보고서식 및 체계 마련 등

IV. 추진계획

□ 각 기관별 내규개정 후 '26.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

구 분	조치 내용	주요 기관
1. 상환능력 기반 시효완성 원칙 확립		
① 상환능력 없는 소액채권 1차 완성	· 기관별 시효관리 기준 정비, 상환능력 심사절차 신설	전 금공, 신복위
② 2차 시효 완성 원칙화		
2. 개선된 원칙에 따라 장기 부실채권 일제 정비		
① 5년~7년, 5천만원 이하 정비	· 각 기관별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쳐 소각 진행	전 금공
② 15년 이상 장기부실채권 일괄 정비	· 소각기준·예외사유 등 지침 확정 및 실무진행(이사회 의결 등)	전 금공
3. 기관별 관리기준 정비 및 캠프의 일원화 관리 강화		
① 기관별 상이한 부실채권 관리 기준·절차 정비	· 각 기관별 상각, 매각, 채무 조정 등 관련 내규 정비 · 캠프 관련 내규 정비	금융위 전 금공
② 기관별 캠프 매각시기·대상 구체화, 캠프는 적극적 채무조정·관리		금융위 캠코
4. 연체초기 골든타임 내 보증부 대출 채무조정 지원 확대		
① 채무조정제도 종합비교 안내 강화	· 기관별 통일된 종합안내 문안 마련	신·기보·농신보·주금공, 서금원 (보증기관), 신복위, 신정원, 은행 등
② 대위변제 前 채무조정 절차 마련	· 금융회사·보증기관·신복위 등 간 협약과 내규 정비	
③ 잔여채권 통합조정		
④ 자체 채무조정시 원금감면 허용	· 각 기관별 채무조정 기준 개정 등	전 금공, 금융위
5. 적극적 채권관리 유인제고와 인프라 정비		
① 공공기관 위탁추심 관행 개선	· 기관별 내규정비 및 CA 선정기준 반영	캠코, 주금공, 예보
② 재산조사 제도 개선	· 기관별 법률개정(채납정보)	기관소요별 협의·추진 등
	· 소관 기관협의(사회보장정보 등)	
③ 성과지표 개선 및 면책제도 마련	· 지표개선 협의(성과지표)	재경부, 금융위 등
	· 각 기관 내규개정(면책근거)	금융위, 전 금공
④ 주요내용 공시 및 업무보고	· 자산관리공사 시스템 개선, 보고체계 마련 등	캠코